

중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에 가입 및 등록된 구단, 선수 등 간에 발생한 분쟁을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 중재에 따라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1. 연맹에 가입한 구단(이하 "구단")
2. 연맹에 가입한 구단과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연맹에 등록한 선수(이하 "선수")
(단, 연봉중재(이하에서 정의함)의 경우는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에 연맹에 가입한 구단 소속으로 등록했던 선수 또는 등록되었던 연도 중에 입대하였던 선수를 포함한다.)
3. 연맹에 가입한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과 입단합의를 하고 현재 그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하 "유소년 선수")

제3조 중재의 대상

- ① 중재는 연봉(기본급 및 수당, 이하 같음)에 관한 중재(이하 "연봉중재")와 연봉 외 분쟁에 관한 중재(이하 "일반중재")로 구분한다.
- ② 연봉중재는 구단과 선수 간 프로축구선수계약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의 연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등록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연맹 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연봉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③ 일반중재는 아래 각 호의 분쟁을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 구단과 선수가 체결한 프로축구선수계약에 관한 분쟁

2. 구단과 구단 간 선수의 이적 또는 임대에 관한 분쟁
3. 구단과 유소년 선수 간 입단합의서에 관한 분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수반되거나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원장 또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결정한 분쟁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연봉중재, 일반중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연봉중재 또는 일반중재를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 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프로구단 대표자 3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위원은 축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중재판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8조 간사와 서기

- ①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된 경우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지명한다.
- ② 간사는 각 당사자의 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당사자 간 사전 합의, 보정명령, 회의 소집 통지, 결정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종재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연맹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종재의 신청 등

제10조 중재의 신청 등

- ① 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봉중재 사건
 2. 일반중재 사건
 3. 재심의 사건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 ③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 ④ 구체적인 신청방법, 절차 및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별로 각 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11조 대리인

- ① 중재를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당사자가 선수 또는 유소년선수인 경우에 한함)
 3. FIFA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대리권의 증명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계(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12조 흡결보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흡결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흡결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입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흡결을 보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 내에 다시 보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흡을 바로잡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청의 각하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중재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요건의 흡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신청을 한 경우
 4. 과거에 위원회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친 분쟁인 경우
 5.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중재의 신청이 있은 후 중재를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인 경우
 7.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회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8. 주장 내용이 국내 법령, FIFA 규정 등에 비추어 중대한 법률행위 위반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성질상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신청사건을 각하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사건 종결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의 철회

- ① 신청인은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신청의 철회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③ 중재신청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청의 변경

신청인은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의 취지 또는 원인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그 변경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통지의 방법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통지는 당사자의 주소, 영업소, 우편연락장소, 유선 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통신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 비밀누설 등 금지

- ①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는 회의 중은 물론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 관련 인원은 회의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봉중재

제18조 연봉중재 신청

- ① 연봉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연봉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해당 시즌 연봉에 관하여 해당 사건을 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청구·답변 내용 또는 협상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일자별로 기재한 것을 말한다)
 2. 각자의 연봉제시액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제1차 연봉제시안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② 중재를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연맹이 정한 정기등록기간의 기준선수 등록마감일(이하 “등록 마감일”이라 한다) 7일 전부터 등록 마감일까지 연봉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 100만원을 연맹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신청인에게 연봉중재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연봉중재절차 회부

- ① 구단과 선수 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마감일까지 당해 연도의 연봉을 합의하지 못하여 선수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연봉중재절차에 회부하여 그 선수의 당해 연도 연봉을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 날에 구단과 선수에게 중재절차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예정일과 필요 서류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을 안내한다.
- ③ 연봉중재 대상이 되어 정기등록기간 내에 연봉 결정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봉중재절차 회부에 따라 대상 선수는 임시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절차 기간 동안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이는 제18조에 따른 연봉중재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④ 구단은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 100만원을 연맹이 통지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위원회는 선수의 연봉제시안을 인용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 연봉제시안 제출

- ① 구단과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해당 연도의 연봉 금액을 명시한 연봉제시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봉제시안에는 해당 연도의 기본급과 각 항목별 수당의 금액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외 조건을 기재할 수 없다.
- ③ 연봉제시안은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제1차부터 제3차에 걸쳐 제출하고, 그 절 차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제1차 연봉제시안 제출:

구단과 선수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또는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통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연봉 금액과 그 근거를 기재한 제1차 연봉제시안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다음날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제1차 연봉제시안을 제공함과 함께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연봉제시안 제출일을 통지한다.

2. 제2차 연봉제시안 제출:

구단과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한 날에 제2차 연봉제시안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다음 날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제2차 연봉제시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차 연봉제시안 제출일을 통지한다. 단, 양 당사자 모두 제2차 연봉제시안을 제1차 연봉제시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제3차 연봉제시안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제3차 연봉제시안 제출:

구단과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한 날에 제3차 연봉제시안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다음 날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제3차 연봉제시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 ④ 제2차 및 제3차 연봉제시안의 금액은 기본급과 수당 모두 전차 연봉제시안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⑤ 제1차 연봉제시안에는 연봉 금액을 제시하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2차 및 제3차 연봉제시안에는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각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제2차 또는 제3차 연봉제시안은 이후 변경할 수 없다.
- ⑦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선수는 제2차 및 제3차의 연봉제시안을 위원회에게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선수에게 연봉제시안의 설명에 대한 녹음, 녹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연봉제시안 미제출

- ① 구단과 선수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1차 연봉제시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제1차 연봉제시안을 해당 연도의 연봉으로 확정한다.
- ② 구단과 선수 중 어느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제2차 또는 제3차 연봉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전차 연봉제시안을 당사자의 최종 제시안으로 본다.
- ③ 양 당사자가 모두 기한 내에 제1차 연봉제시안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연봉을 결정한다.

제22조 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연봉중재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회의 개최장소 및 기일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 개최 전 합의

- ① 양 당사자는 회의 개최일 전 날까지에 한하여 중재의 대상이 된 연봉을 합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양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위원회는 합의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봉으로 결정한다.

제24조 회의 출석 등

- ① 각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봉제시안을 해당 연도의 연봉으로 확정한다.
- ③ 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증인을 참가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또는 증인도 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5조 심리

-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구술심리에 의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회의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양 당사자가 모두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당사자 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연봉을 결정한다.

제26조 연봉중재 판정

- ① 위원회는 제21조, 제23조를 제외하고서는 출석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당사자의 연봉제시액을 해당 연도의 연봉으로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양 당사자가 제시한 연봉제시액 사이의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연봉에 관한 결정만을 할 수 있고, 연봉 이외의 조건이나 그 연도 이후의 연봉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 ④ 중재판정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판정주문
 3. 신청취지
 4. 판정이유
 5. 작성날짜
- ⑤ 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연봉중재판정문 정본 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연봉중재 판정의 효력

- ① 연봉중재 판정은 제36조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그 즉시 확정된다.
- ② 확정된 연봉중재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연봉중재 판정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맹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맹은 확정된 연봉중재판정문에 따라 대상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 ④ 확정된 연봉중재 판정을 당사자가 불이행할 경우 연맹 사무총장은 그 당사자를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중재판정 및 진행경과 등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일반중재

제28조 일반중재 신청

- ① 일반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일반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②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 100만원을 연맹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 또는 유소년 선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신청인에게 일반중재신청서 및 서증 사본을 송부함으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일반중재 신청 및 선수등록

일반중재 대상이 된 선수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중재 신청에 따라 대상 선수는 임시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절차 기간 동안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제29조 사전합의절차

- ①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향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위원회는 위 제1항의 권고를 할 경우 양 당사자의 수용 또는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의 기한을 권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당사자는 그 기한 내에 서면으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서면으로 거절하지 않는 경우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위원장은 사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즉시 서면으로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서면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 답변서 제출

- ① 피신청인은 제28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답변취지
 3. 답변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작성날짜
- ②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위임장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피신청인이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리없이 중재신청의 취지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거나 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중재신청을 변형한 판정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 제1항에 따른 답변서 및 서증이 제출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답변서와 서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의개최

- ① 위원회는 일반중재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회의 개최장소 및 기일을 자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 출석 등

- ① 각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의견은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증인을 참가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또는 증인도 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33조 심리

- ① 위원회는 심리절차의 신속,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구술심리에 의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심리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양 당사자가 모두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34조 일반중재 판정

- ① 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내려야 한

다.

- ②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판정주문
 3. 신청취지
 4. 판정이유
 5. 작성날짜
- ③ 위원회부는 일반중재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
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일반중재판정문 정본
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일반중재 판정의 효력

- ① 일반중재 판정은 제36조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그 즉시 확정된다.
- ② 확정된 일반중재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중재 판정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맹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맹은 확정된 일반중재판정문에 따라 대상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 ④ 확정된 일반중재 판정을 당사자가 불이행할 경우 연맹 사무총장은 그 당사자를 상벌위원
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중재판정 및 진행경과 등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36조 이의신청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맹 중재 판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
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